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 제출



우리 협회는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한국LPG가스판매협회 중앙회, 대한LPG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 신 : 지식경제부 장관

참 조 : 가스산업과장 / 석유산업과장

제 목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관련 의견 제출

1.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 입법되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기 법안에 따르면 석유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석유시설 입주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업계에 더욱 큰 부담이 되므로 기

금 납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기금 납부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첫째, 기금 납부시 LPG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LPG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LPG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로 기금 납부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LNG 위주 보급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프로판의 경우 경쟁연료인 LNG 대비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자칫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됩니다.

둘째, LPG사업자의 기금 출연 의무화는 사업자의 신규 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즉, LPG사업자가 기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사내 투자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신규 투자를 제한받게 되고, 초고유가 시대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LPG사업자에게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PG사업자에게 국내 내수 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PG사업자는 수천억원을 투자하여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재고 유지에 따른 추가 재고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한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LPG사업자에게 기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4. LPG사업자에게 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의무 부과하기로 한 상기 법률안에 대해 검토 시,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7.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박찬목
대한LPG협회	회장 정진성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장 유수륜